선의취득제도의 적용경우와 법적효과

한 철 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이 사회주의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법이 옳게 제정되여야 할뿐아니라 정확히 적용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6폐지)

선의취득제도의 적용경우와 법적효과는 선의취득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선의취득은 원소유권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자에게 부여하는 법률사실이다. 원소유권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것으로 하여 선의취득제도의 적용을 심중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선의취득제도의 설정목적만을 중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가가 법을 통하여 보호하는 보다 큰 리익이 침해될수 있다. 그러므로 선의취득제도의 적용경우를 법으로 명확히 규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선의취득제도의 설정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선의취득의 법적효과도 바로 규정해야 한다.

선의취득제도의 적용경우와 법적효과에 대하여 공화국민법에서는 구체적인 매 경우를 갈라서 규제하고있다.

무엇보다먼저 선의로 점유한 재산이 국가소유재산일 때에는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화국민법에서는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즉 기관, 기업소는 자기 의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넘겨받은자가 넘겨주 는자에게 그것을 넘겨줄 권한이 없다는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물론 몰랐을 때에도 그 반 환을 요구할수 있다. 즉 국가소유재산에 대하여서는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적 용되지 않는다.

민법에서 국가소유재산에 대하여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소유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요한 소유형태인것과 관련된다.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이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집단의 리익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실현해나 갈것을 요구한다.

집단주의의 이러한 요구는 소유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의 소유로서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소유를 보호하는것은 집단주의의 본성적 요구이다.

그런데 선의취득제도는 이러한 국가소유를 보호하는데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있다. 선의취득은 일정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로 이전 되게 하는 공간의 하나이다. 만일 국가소유재산에 대하여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선의취득으로 국가소유재산이 다른 민사관계 당사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갈수 있다.

이로부터 공화국민법에서는 국가소유재산에 대하여서는 선의취득을 적용하지 않고있다.

다음으로 선의로 점유한 재산이 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일 때에는 선의점유자가 누구 인가에 따라 선의취득제도의 적용여부와 법적효과가 다르다.

국가기관, 기업소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 가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공화국민법에서는 명확히 밝히고있다.

공화국민법에서는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권한없는자가 넘긴다는것을 모르고(당시에는 알수 없는 조건) 산 국가기관, 기업소에 대하여서는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국가기관, 기업소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 그러한 재산은 국가기관, 기업소의 생산경영활동이나 운영에 리용되게 된다. 그런것만큼 단순히 그 원소유 권자인 사회협동단체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반환하도록 한다면 사회협동단체의 리익은 보호할수 있지만 국가의 리익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기관, 기업소가 취득하게 하여 국가적리익을 보호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사회협동단체소유에 대한 보호보다 선의취득제도의 설정목적이 더 중시된다. 따라서 국가기관, 기업소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된다.

국가기관, 기업소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 그 기관, 기업소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다.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기관, 기업소에 대하여 재산반환을 청구할수 없으며 단지 권한없이 그 재산을 넘겨준자에게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뿐이다. 이에 대하여 공화국민법에서는 권한없이 넘겨준자로부터 사회협동단체가 손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있다.

선의취득제도를 통하여 선의로 점유한 재산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원소유권자의 손해보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권한이 없이 자기 재산을 넘겨준자의 허물로 인하여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한것만큼 원소유권자인 사회협동단체는 응당 그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협동단체나 개별적공민이 다른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화국민법에는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이에 의하면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재산이 권한없는자(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빌린자나 그 보관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개별적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넘겨받은자들이 넘겨주는자에게 넘겨줄 권한이 없다는것을 모르고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공화국민법에서 사회협동단체가 다른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지 않고있는것은 사회협동단체소유도 집단소유의 한 형태로 보호 하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된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그에 속한 성원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협동단체소유도 중시하고 보호한다. 그러므로 선의취득제도를 통하여 한 사회

협동단체의 재산이 다른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넘어가 손해를 보게 할수 없다. 만일 이런 경우에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여 선의로 점유한 사회협동단체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회협동단체에는 리익이 되지만 소유권을 상실한 사회협동단체는 억울한 손실만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재산의 원소유권자인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는것 즉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개별적공민이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도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여 개별적공민이 선의로 점유한 사회협동단체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것보다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권을 보호하는것이 명백히 합리적이다.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개별적공민이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의 법적효과를 보면 넘겨받은 사회협동단체나 개별적공민은 해당 재산을 원래 소유권자인 사회협동단체에 반환해야 한다.

선의로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넘겨받았던 사회협동단체가 권한이 없이 그 물건을 넘겨준자에게 해당한 손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공화국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법상의 허물책임원칙에 따르면 권한이 없이 그 물건을 넘겨주 어 물건을 넘겨받은 사회협동단체가 손해를 입게 한자는 응당 해당한 손해를 보상해주어 야 한다.

다음으로 선의로 점유한 재산이 개별적공민의 재산일 때에는 선의점유자가 누구인가 에 관계없이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된다.

개별적공민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선의취득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 선의로 점유한 재산이 개별적공민의 재산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의 설정목적이 개별적공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들의 소유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이 소유권을 침해당한 개별적공민에 대하여서도 비법점유재산반환청구권, 소유권실현방해행위제거청구권을 부여한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그러나 선의로 점유한 대상이 개별적공민의 재산인 경우에는 개인소유권에 대한 보 호보다 거래의 안정과 활성화를 보장하는것이 더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만일 개별적공민의 소유재산에 대하여서도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몇몇 공민들의 개인소유는 보호해줄지 모르나 전반적거래의 안정과 활성화를 보장할수 없게된다. 개별적공민의 소유재산을 선의로 점유하였지만 그것을 그 임자에게 반환한다면 거래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다른 당사자들도 다음번 거래에서는 거래대방이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있는자인가를 확인하려 하게 된다. 거래실천에서 매 거래대상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것을 확인하는것은 쉽지 않으며 때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은 거래의 안정은 물론이고 거래의 활성화에 심각한 부정적후과를 미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적거래의 안정과 활성화를 보장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로부터 개별적공민의 소유재산에 대하여서는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된다.

국가기관, 기업소가 개별적공민의 재산을 그에 대한 권한이 없는자로부터 선의로 넘

겨받은 경우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된다는데 대하여서는 공화국민법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가 선의로 점유한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여있는것만큼 선의로 점유한 개별적공민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는것은 당연하다.

국가기관, 기업소가 개별적공민의 재산을 그에 대한 권한이 없는자로부터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 국가기관, 기업소는 그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재산의원주인인 개별적공민은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다만 권한없이 그 재산을 넘겨준자에게서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적효과에 대해서도 공화국민법에서는 명확히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우의 법적효과는 응당한것이다.

사회협동단체가 개별적공민의 재산을 그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자로부터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되여 사회협동단체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에 대하여 공화국민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선의취득제도의 설정목적을 고려해볼 때 우와 같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되여야 한다.

사회협동단체가 개별적공민의 재산을 선의로 넘겨받은 경우 그러한 재산은 그 사회 협동단체의 생산경영활동이나 운영에 리용되게 된다. 그런것만큼 단순히 그 원소유권자인 개별적공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반환하도록 한다면 개별적공민의 리익 은 보호할수 있지만 사회협동단체의 리익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 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회협동단체가 취득하게 하여 사회협동단체의 리익을 보호하 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우에서 본 국가기관, 기업소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점유한 경우 선의취득 제도를 적용한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협동단체가 개별적공민의 재산을 선의로 점유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기업소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선의로 점유한 경우와 관련한 공화국민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민법에 따르면 사회협동단체는 선의로 점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개별적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선의로 점유한 사회협동단체에 대하여 재산반환을 청구할수 없고 단지 권한없이 그 재산을 넘겨준자에게서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개별적공민이 다른 공민의 재산을 그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자로부터 선의로 넘겨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공화국민법에서는 명확히 규정하 고있다.

공화국민법에서는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것을 모르고 가진 공민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개별적공민이 다른 공민의 재산을 그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자로부터 선의로 넘겨받은 경 우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개별적공민들사이관계에서는 어느 개별적공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것보다 거래의 안정과 활성화를 보장하는것이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개별적공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것은 개인의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이지만 거래의 안정과 활성화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적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거래의 안정과 활성화를 보장하자면 선의취득제도를 적용하는것이 유리하다. 이로부터 개별적공민들사이관계에서는 선의취득제도가

적용된다.

이 경우의 법적효과에 대하여서는 공화국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있다. 공화국민법에 의하면 다른 공민의 재산을 선의로 점유한 공민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재산의 주인은 선의로 점유한 공민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여기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우의 경우들에 재산을 선의로 취득한자가 가지는 소유 권은 재산의 원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라는것이 다. 다시말하여 재산의 원소유권자가 해당한 대가지불을 전제로 재산반환을 청구하면 선 의취득자는 재산을 원소유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화국민법에서는 선의취득제도의 설정목적과 함께 개별적민사관계 당사자들의 리익도 고려한다. 따라서 물건의 원소유권자가 처분권이 없는자에 의하여 본의아니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소유권회복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있다. 즉 원소유권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희망하여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물건을 반환하도록 하고있다. 즉 원소유권자의 재산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원소유권자의 소유물반환청구는 해당한 대가의 지불을 전제로 한다. 만일 원소유권자의 리익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대가의 지불도 없이 반환하게 한다면 원소유권자의리익을 보호할수는 있지만 선의취득자의 리익이 침해되게 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선의취득자의 리익도 보호하면서 소유권회복을 희망하는 원소유권자의 리익도 보호하기 위하여 원소유권자가 재산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원소유권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원소유권자는 재산을 찾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처분권이 없이 자기 물건을 처분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의 손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여 당연한것이다.

공화국민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원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에게 손해를 조성한자는 응당 해당한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선의취득제도의 적용경우와 법적효과를 비롯하여 민법의 규제내용전반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지고 그를 더욱 발전완성시키며 실무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적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선의취득, 적용경우, 법적효과